

CLUB  THE ONE & ONLY

CLUB1 주요 서비스

구분	서비스	개인	법인	가족
Travel	항공마일리지 적립 - 대한항공 1M/1,500원, 아시아나항공 1M/1,000원 - 적립한도 : 제한없음 [단, 법인카드는 연간 10만(아시아나항공), 6만(대한항공) 한도]	○	○	○
	항공 좌석 승급 또는 동반자 비즈니스석 무료 항공권 (택 1) - 좌석 승급 : 대한항공명 비즈니스→퍼스트, 아시아나명 비즈니스→비즈니스 스위트 미주/중동/유럽/오세아니아 (연 1회) 또는 동남아/일본/중국(연 3회) - 동반자 비즈니스석 : 동남아/일본/중국 (연 1회)	(개인 or 법인)		X
	공항 라운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국내외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	○	○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	○	○	○
trendy OPTION	trendy OPTION (연 3개 선택 가능) ① trendy MILEAGE - 더블 마일리지 - 대한항공 1M/1,500원, 아시아나항공 1M/1,000원 추가 적립 ② trendy SMART - 최신 스마트폰 제공 또는 고반발 배드라이버 제공(뱅크골프) ③ trendy GLOBAL - 해외호텔 최소 2박 이상 투숙 시 1박 무료 (1박당 USD 500 이내) ④ trendy WINE - 고급 와인 제공 ⑤ trendy GOLF - 고급 리조트 숙박패키지 OR 골프패키지 중 택 1 ⑥ trendy HOTEL - 호텔멤버십 (파르나스, 롯데, 워커히, 조선포텔앤리조트) 중 택 1	택 3 개 (개인 or 법인)		택 1 개 (SMART 선택 제외)
	호텔 무료 발레파킹	제한없음	호텔별 10회	호텔별 5회
	식음료 할인	○	○	○
	객실 할인	○	○	○
	호텔 무료 발레파킹	제한없음	호텔별 10회	호텔별 5회
	식음료 할인	○	○	○
객실 할인	○	○	○	

구분	서비스	개인	법인	가족
Duty Free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10% 청구 할인 (할인금액 기준 연 100만원 한도)	○	X	○
	신라면세점 5~15% 할인 (5% 추가 현금 캐시백)	○	○	○
Golf	KLPGA Tour 하나금융그룹 Championship 입장권 제공	(개인 or 법인)		X
	홀인원 상금 서비스 (연 1회, 국내)	200만원 (개인 or 법인)		100만원
	골프상해보험 무료 가입 (최고 75백만원)	○	○	○
	해비치 컨트리클럽 제주 그린피 할인,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	○	○
Life Style	[가족카드 서비스] 갤러리아 명품관, 롯데백화점 본점, AVENUE 10% 청구 할인 (할인금액 기준 연 100만원 한도)	X	X	○
Finance	하나금융그룹 수수료 면제 및 우대 (ATM 수수료 면제,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해외 송금 수수료 50% 면제 등)	○	X	○
	OK CASHBAG 적립 / 사용	○	○	○
Mastercard World	이 상품은 mastercard World 유형의 국제 브랜드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을 별도의 mastercard World 서비스 안내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무료 발레파킹 - 인천공항 제휴 라운지 무료 입장 -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레파킹 -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F&B 할인 - 국내 특급호텔 스파 할인 등	○	○	○

Contents

CLUB1 Information	7	CLUB1 카드 종류 및 연회비
CLUB1 Travel	9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12	일등석(또는 비즈니스 스위트) 무료 업그레이드 또는 동반자 비즈니스석 무료 항공권
	16	Priority Pass Digital 서비스
	18	국내외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19	글로벌 컨시어지
CLUB1 trendy OPTION	21	trendy OPTION 소개
	22	1. trendy MILEAGE (더블마일리지)
	23	2. trendy SMART (최신 스마트폰 제공 또는 교반발 밴드라이버 제공)
	24	3. trendy GLOBAL (해외호텔)
	25	4. trendy WINE (와인)
	26	5. trendy GOLF - 고급 리조트 숙박패키지 OR 골프패키지 중 택 1
	27	6. trendy HOTEL (호텔 멤버십)
	28	- 파르나스호텔
	32	- 롯데 호텔
	36	- 워커히 호텔
	40	- 조선호텔앤리조트
CLUB1 Hotel	45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레파킹
	46	국내 특급호텔 식음료 할인
	47	국내 특급호텔 객실 할인

CLUB1 Duty Free	49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10% 청구 할인
	50	신라면세점 5~15% 할인(5% 추가 현금 캐시백)
CLUB1 Golf	53	KLPGA 하나금융그룹 Championship
	54	홀인원 상금 지원 서비스 / 골프상해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55	해비치 컨트리클럽 제주 그린피 할인,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CLUB1 Life Style	57	[가족카드 서비스] 갤러리아 명품관, 롯데백화점 본점, AVENUE1 10% 청구 할인
	58	발란타인 10% 할인
	60	에클라바치 10% 할인
	62	암살라 10% 할인
	64	웨이우드 10% 할인
	66	시스템 플라워스 10% 할인
CLUB1 Finance	68	하나금융그룹 우대서비스
	69	OK CASHBAG 적립 / 사용
	70	카드 이용 안내
	74	약관



CLUB1 카드 종류·연회비 안내

카드종류 CLUB1 SKYPASS (대한항공), CLUB1 Asiana Club (아시아나항공)

연회비 국내외겸용 (mastercard World)

구분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	총 연회비
개인회원	본인	5만원	195만원	200만원
	가족	5만원	45만원	50만원
법인회원	사용자 지정	5만원	195만원	200만원

* 개인회원 본인, 법인회원 사용자 지정 : 제휴연회비는 trendy OPTION 서비스 및 좌석승급/동반자 항공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 개인회원 가족 : 제휴연회비는 trendy OPTION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 연회비청구

- 카드 발급일(발급 첫해에는 카드사용등록일)이 속한 카드이용기간의 첫 결제일에 청구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연회비 반환기준

-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비용(발급 첫 해 연회비에 한정),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됩니다.

· 연회비 반환시기

- 카드 해지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상품의 경우 카드 해지일 기준 다음 다음달 5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CLUB1 카드는 대한항공 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시아나항공 카드는 2025년 4월 30일부로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기존 고객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이용 가능하나 전환 및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 카드 종류별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해당 항공사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 CLUB1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동시에 소지하신 경우 연회비는 200만원만 청구됩니다.
- 연회비는 카드가 발급되면 자동 청구됩니다.
- CLUB1 법인카드의 혜택과 서비스는 법인카드의 명이자 분에게 제공됩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내용 CLUB1 SKYPASS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국내외 일시불, 할부)

·적립된 마일리지는 주민번호 기준으로 통합 적립되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적립 제외 : 국제, 지방세, 연회비, 무이자할부,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상품권 구매, 대학등록금, 기타 제수수료

※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서비스 상세내용 및 공제기준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한도 ·적립한도 없이 적립(단, 법인카드는 연 6만 마일까지 적립됩니다.)

이용문의 · 대한항공 1588-2001
·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www.koreanair.com>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내용 CLUB1 Asiana Club카드 사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가 적립됩니다.(국내외 일사불, 할부)

·적립된 마일리는 주민번호 기준으로 통합 적립되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적립 제외 : 국세, 지방세, 연회비, 무이자 할부,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권 구매, 대학등록금, 기타 제수수료

※ 아시아나 마일리지 관련 서비스 상세내용 및 공제기준은 아시아나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한도 ·적립한도 없이 적립(단, 법인카드는 연 10만 마일까지 적립됩니다.)

이용문의 ·아시아나클럽 서비스센터 02-2669-8180
·아시아나클럽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항공 좌석 승급 또는 동반자 비즈니스석 무료 항공권 (택 1)

대한항공 일등석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내용 · 본인회원이 대한항공 해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 왕복항공권 이용 시 일등석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공노선 · 국제선

제공횟수 · A노선 - 미주,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연 1회
· B노선 - 동남아, 일본, 중국 - 연 3회
(A노선과 B노선 중 택 1 하여 이용가능)

제공조건 · 전년도 사용실적 5천만원 이상 시 제공
(전년도 실적은 연회비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실적)
· 발급초년도에는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제공

대한항공 동반자 프레스티지(비즈니스)무료 항공권

혜택내용 · 본인회원이 대한항공 해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 왕복항공권 이용 시 동반 1인 무료 항공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본인회원과 동일한 여정으로 이용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공노선 · 동남아, 일본, 중국

제공횟수 · 연 1회

제공조건 · 전년도 사용실적 5천만원 이상 시 제공
(전년도 실적은 연회비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실적)
· 발급초년도에는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제공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유의사항

- CLUB1 컨시어지를 통한 본인회원의 정상기 항공권 사전 예약 및 CLUB1 카드로 발권 시 (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결제)에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항공권 일부 결제 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연회비 청구 기준으로 연 1회 사용 가능(발권일 기준)하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미사용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일등석 무료 업그레이드와 동반자 무료 항공권의 동시 사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 좌석 업그레이드 B노선 1회 사용 후 동반자 무료 항공권 신청 불가)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전 CLUB1 컨시어지에 예약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은 환불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 발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원당 제공되는 서비스로 CLUB1 개인, 법인카드 동시 소지자의 경우 혜택이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CLUB1 가족카드 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CLUB1 SKYPASS카드 소지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대한항공을 제외한 타 공동운항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노선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시1) 한국 → 국외, 국외 → 한국 (O)
국외 → 한국, 한국 → 국외 (X)
(예시2) 한국 → 파리, 파리 → 비엔나, 비엔나 → 파리, 파리 → 한국 (X)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스위트 클래스 무료 업그레이드

- 혜택내용**
 - 본인회원이 아시아나항공 해외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 이용 시 비즈니스 스위트 클래스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노선**
 - 국제선
- 제공횟수**
 - A노선 - 미주,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연 1회
 - B노선 - 동남아, 일본, 중국 - 연 3회
(A노선과 B노선 중 택 1 하여 이용가능)
- 제공조건**
 - 전년도 사용실적 5천만원 이상 시 제공
(전년도 실적은 연회비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실적)
 - 발급초년도에는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제공
 -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님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A노선 : 60,000마일리지, B노선 : 15,000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동반자 비즈니스 무료 항공권

- 혜택내용**
 - 본인회원이 아시아나항공 해외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 이용 시 동반 1인 무료 항공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본인회원과 동일한 여정으로 이용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공노선**
 - 동남아, 일본, 중국
- 제공횟수**
 - 연 1회
- 제공조건**
 - 전년도 사용실적 5천만원 이상 시 제공
(전년도 실적은 연회비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실적)
 - 발급초년도에는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제공
-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 유의사항**
 - CLUB1 컨시어지를 통한 본인회원의 정상기 항공권 사전 예약 및 CLUB1 카드로 발권 시 (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결제)에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항공권 일부 결제 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연회비 청구 기준으로 연 1회 사용 가능(발권일 기준)하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미사용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비즈니스 스위트 무료 업그레이드와 동반자 무료 항공권의 동시 사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 좌석 업그레이드 B노선 1회 사용 후 동반자 무료 항공권 신청 불가)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전 CLUB1 컨시어지에 예약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은 환불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 발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원당 제공되는 서비스로 CLUB1 개인, 법인카드 동시 소지자의 경우 혜택이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CLUB1 가족카드 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CLUB1 Asiana Club카드 소지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타 공동운항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노선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시1) 한국 → 국외, 국외 → 한국 (O)
국외 → 한국, 한국 → 국외 (X)
(예시2) 한국 → 파리, 파리 → 비엔나, 비엔나 → 파리, 파리 → 한국 (X)



Priority Pass Digital 서비스

CLUB1 회원님의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Priority Pass Digital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세계 1300여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이 가능한 Priority Pass Digital 서비스로
CLUB1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혜택내용 · CLUB1카드 소지고객 본인에 한하여 제휴 공항라운지 무료입장 서비스 제공
※ 본인과 동반자 함께 입장 시, 동반자 이용요금은 CLUB 1 카드 소지고객 앞 결제금액으로 청구
(매 방문 시 인당 27달러)
· 서비스 제공 라운지 확인 : www.prioritypass.com/ko

이용방법 · CLUB1 카드 실물과 당일 탑승권을 라운지 안내데스크에 제시 후
Priority Pass Digital 고객임을 밝혀야 합니다.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전 Priority Pass Digital 서비스 제공 라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운지 입장 시점 유효한 카드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실/도난, 연체, 미등록카드, 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 된 카드는 이용 불가)
·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을 위하여 3.25달러의 수수료가 승인되나, 본인 입장인 경우 청구되지 않습니다.
· Priority Pass Digital 홈페이지(www.prioritypass.com/ko),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입장 가능한 라운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운지 방문기록은 Priority Pass Digital 홈페이지(www.prioritypass.com/ko),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계정 생성 후 확인 가능하며, 라운지 방문 일자로부터 3~5영업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전 라운지에 이용 가능 여부 및 동반자 이용 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Priority Pass Digital 고객센터

홍콩	+852 2866 1964	한국어 안내	월요일~금요일 09:30 ~20:00
		영어 안내	365일 24시간
중국	+86 400 120 2464	광둥어, 중국어, 일본어	월요일~금요일 09:30~20:00

※ Priority Pass Digital 고객센터 이용 시, 국제 통화료가 적용됩니다.

· CLUB1 컨시어지 : **1599-1177**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국내외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담보	보장내용	보장한도(원)	피보험자	카드 결제여부
해외여행 중 상해 (90일 한도)	사망 및 영구적 후유장애	1,000,000,000	카드회원 및 가족포함	카드로 결제 시 담보
	상해의료비	5,000,000		
	질병의료비	5,000,000		
	배상책임 (공제 1만원)	2,000,000		
	휴대품손해	1,000,000	카드회원	
국내여행 시 공공교통수용구 탑승 중 상해	사망 및 영구적 후유장애	1,000,000,000	카드회원 및 가족포함	
여행불편보상	연결항공탑승 불가, 수화물 지연, 수화물 손실	3,000,000		
구매물품보상	구매물품보상 (공제 3만원)	10,000,000	카드회원	
휴일 교통 상해	사망 및 영구적 후유장애	75,000,000	카드회원	카드회원 자동담보
	휴일 중 배상책임 (공제 2만원)	7,500,000		

※ 가족 : 법적배우자 및 만 23세 미만 부양자녀 (단, 사망담보의 경우 만 15세 미만 부양자녀 제외)

※ 공공교통 수용구 :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운송수단 (항공, 철도, 여객선 등), 교통카드 결제분 제외

※ 해외여행 중 상해 및 여행불편보상은 항공기 탑승요금 전액 카드결제 조건 (패키지 상품의 경우 50% 이상)이며

국내 공공교통수용구 탑승 중 상해는 공공교통수용구 탑승요금 전액 카드결제 조건, 구매물품보상은 구매물품 카드결제 조건, 휴일교통상해는 카드결제와 무관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상품안내 데스크 : 02-360-2588

보상전담 데스크 : 1899-4040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

회원님의 편안하고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해서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해외에서의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현지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는 해외 컨시어지 서비스로, 한국어 및 영어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 해외 컨시어지 서비스

- 해외 현지에서의 여행 도중 또는 해외여행 계획을 CLUB1 글로벌 컨시어지센터가 도와드립니다.
- TRAVEL 서비스
- TRANSPORTATION 서비스
- LEISURE 서비스
- ENTERTAINMENT 서비스
- ART 서비스
- BAR & DINING 서비스
- BEAUTY 서비스
- GIFT 서비스

이용방법

- CLUB1 글로벌 컨시어지(어스파이어라이프스타일)를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별도로 요청되는 비용은 없으며, 서비스의 성격상 실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 실제 비용 및 이용 수수료가 회원님께 청구됩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 ※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 문의 및 상담 (어스파이어라이프스타일)
- 국내 : 02-6240-3678
- 해외 여행 시 : 82-2-6240-3678

trendy OPTION



trendy OPTION 서비스

더블 마일리지, 호텔 멤버십, 와인, 골프 패키지 등 다양한 옵션 중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다음의 trendy OPTION을 매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 3개, 가족카드 1개)

1. trendy MILEAGE 더블 마일리지 적립
2. trendy SMART 최신 스마트폰 제공 또는 고반발 밴드라이버 제공
3. trendy GLOBAL 해외 호텔 2박 시 1박 지원
4. trendy WINE 고급와인 제공
5. trendy GOLF 골프패키지 제공
6. trendy HOTEL 특급호텔 멤버십 제공

유의사항

- 본인카드 회원은 상기 6개 옵션 중 3개, 가족카드 회원은 trendy SMART를 제외한 5개 옵션 중 1개를 선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trendy OPTION 서비스는 1년 단위(연회비 주기)로 제공되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미사용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신청 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CLUB1 카드로 국내외 일시불 / 할부 합계 100만원 이상 사용 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CLUB1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동시에 소지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혜택이 중복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 OPTION에 대해서 연간 1회만 선택 가능합니다.
(예 : 3개 선택 시 MILEAGE 2개, WINE 1개 선택 불가)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1 trendy MILEAGE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회원님을 위해 특별한 마일리지 혜택을 드립니다.

혜택내용 더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trendy MILEAGE 서비스를 선택하신 회원님께 기본 마일리지 적립 외에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립니다.
- CLUB1 SKYPASS : CLUB1 사용금액 (국내외 일시불 / 할부) 1,500원당 1마일리지 적립+1마일리지 추가 적립
- CLUB1 Asiana Club : CLUB1 사용금액 (국내외 일시불 / 할부)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1마일리지 추가 적립

적립한도

- 개인카드
 - CLUB1 SKYPASS : 기본적립 + 추가적립 = 연간 10만 마일까지 적립 (※ 10만 마일 도달한 경우 기본적립만 적용)
 - CLUB1 Asiana Club : 기본적립 + 추가적립 = 연간 10만 마일까지 적립 (※ 10만 마일 도달한 경우 기본적립만 적용)
 - 법인카드
 - CLUB1 SKYPASS : 기본적립+추가적립 = 연간 6만 마일까지 적립 (※ 연간 6만 마일 도달 이후 적립 중단)
 - CLUB1 Asiana Club : 기본적립+추가적립 = 연간 10만 마일까지 적립 (※ 연간 10만 마일 도달 이후 적립 중단)
- ※ 마일리지 적립 제외 : 국제, 지방세, 연회비, 무이자할부,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권 구매, 대학등록금, 기타 제수수료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신청 후 변경 /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 신청월로부터 연회비 주기 동안에 제공됩니다.
- 법인카드 적립한도 (SKYPASS 연간 6만, Asiana Club 연간 10만)는 연도별로 적용됩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2 trendy SMART



CLUB1 회원님들의 Life Style 에 맞추어 최신 스마트폰 또는 고반발 뱅골프 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립니다.

혜택내용 최신 스마트폰 또는 고반발 뱅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립니다.

· **최신 스마트폰 선택시**

- 최신 스마트폰은 하나카드가 지정한 모델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께서 SK Telecom 에 가입되시며, 가입에 필요한 휴대폰 구매 비용, 가입비, USIM 카드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은 하나카드에서 부담합니다.
- 가입 시 해당 스마트폰의 전용요금제(SKT)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며, 선택한 요금제에 따른 통신 비용은 회원님 부담입니다.
- 본 서비스는 본인회원 명의로만 제공되며 2년 유지 조건입니다. 2년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뱅크프 최첨단 스윙분석권 + 고반발 뱅드라이버 선택시**

- 뱅골프 드라이버는 하나카드가 지정한 모델로 제공해 드립니다.
- 뱅골프 본사에 방문하시어 최첨단 장비로 정밀하게 스윙분석 후, 회원님께 맞는 무게, 길이, 강도, 스윙웨이트 등이 최적화된 뱅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립니다.
- 사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드라이버 AS는, 뱅골프의 AS 규정을 적용하며 무상 AS기간이 경과되어발생되는 비용은 회원님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본인회원 명의로만 제공됩니다.
- 가족카드 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 (주)뱅크프코리아 1544-8070

3 trendy GLOBAL



해외에서도 내 집 같은 편안한 휴식, CLUB1 회원만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 해외 호텔 최소 2박 이상 투숙 시 1박을 CLUB1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동일 호텔 최소 2박 이상 연박 투숙 시 CLUB1 카드로 1박 요금을 제외한 잔여 요금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 실제 투숙 일정으로 예약 후 체크인 날짜를 제외한 2일째 비용에 대해서 무료 숙박이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CLUB1 컨시어지를 통한 사전 예약 및 CLUB1 카드로 사전 결제를 완료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지에서 숙박일수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호텔의 증빙서류를 받아오셔야 환불요청이 가능하며, 변경 또는 취소 시 해당 호텔에서 부과되는 패널티는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호텔요금은 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약회원과 투숙회원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지 호텔에서 투숙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료 숙박이 가능한 객실 1박 요금은 USD 500 이하이며, 1박당 USD 500 초과 객실 이용 시 초과 금액은 회원님의 CLUB1 카드로 청구됩니다.
- 이용 가능한 호텔은 CLUB1 컨시어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한하며 일부 예약사이트와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4 trendy WINE



특급 호텔에서 엄선한 최고급 와인을 제공해드립니다.

혜택내용 trendy WINE 서비스 선택 시 고급 Wine 증정
(특급 호텔 소믈리에 선정)

유의사항 · 제공 가능 브랜드는 CLUB1 컨시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5 trendy GOLF



CLUB1 회원님을 위한 품격있는 휴식과 다이내믹한 라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혜택내용 고급 리조트 숙박 패키지 또는 골프패키지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 택1 하여 이용 가능)

- 1.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숙박 패키지 또는 골프 패키지 중 택1**
- 숙박 패키지 : 스위트 객실 1박(조식포함) + 1일차 석식(2인) + 사우나(2인)
 - 골프 패키지 : 스위트 객실 1박(조식포함) + 주중 18홀 그린피(2인)
+ 주중 클럽하우스 중식(2인) + 사우나(2인)

- 2. 더예븐 리조트 숙박 패키지 또는 골프 패키지 중 택1**
- 숙박 패키지 : 스위트 객실 1박(조식포함) + 1일차 석식(4인) + 사우나(4인)
 - 골프 패키지 : 더예븐 CC 골프 18홀 그린피(4인)

유의사항

- CLUB1 컨시어지를 통해 사전예약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약의 취소 및 변경 관련 유의사항은 각 호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내의 특전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전 CLUB1 컨시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6 trendy HOTEL



CLUB1 회원님을 위한 최상의 품격을 갖춘 호텔 멤버십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호텔 네 곳 중 원하는 멤버십을 선택해 많은 혜택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호텔 멤버십 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더파르나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웨스턴 서울 파르나스, 파르나스 호텔 제주
2. 트레비클럽 롯데호텔
3.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워커힐호텔
4. 클럽 조선 VIP 골드 조선호텔앤리조트

※ 멤버십 서비스의 상세내용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각 호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THE WESTIN
SEOUL PARNAS

PARNAS
HOTEL-JEJU



1 파르나스 호텔 더파르나스 멤버십

THE PARNAS MEMBERSHIP

CLUB1 회원님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파르나스 호텔 제주의 더파르나스 멤버십 스마트 타입을 제공해 드립니다.

· 멤버십 가입을 원하실 경우 CLUB1 컨시어지 (1599-1177)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르나스 호텔 더파르나스 스마트

멤버십 혜택

혜택사항	적용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무료 숙박권 1매 · 레스토랑 5만원 이용권 7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 파르나스 호텔 제주

※ 상기 멤버십 서비스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성수기 기간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파르나스호텔의 "더파르나스 멤버십" 안내장 및 호텔 홈페이지의 멤버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할인 혜택

혜택사항	적용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요금(BFR) 기준 15%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 파르나스 호텔 제주

※ 모든 객실 타입 이용 가능

식음료 혜택

혜택사항	적용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인 식사 주문 시 : 식사 요금의 20% 할인 · 3~7인 식사 주문 시 : 1인 식사 무료 제공 · 8~19인 식사 주문 시 : 2인 식사 무료 제공 · 20~30인 식사 주문 시 : 식사 요금의 10% 할인 * 위스키, 곶나, 와인올 병으로 주문하실 경우 10% 할인 (타 음료 및 주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 파르나스 호텔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 라운지&바, 그랜드 델리, 더 로그, 에피셀라, 에딧, 폰드메르 라운지&바 <p>식음료 10% 할인</p>	

※ 상기 혜택은 연회행사 및 룸 서비스 이용 시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기 멤버십 서비스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성수기 기간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파르나스 호텔의 "더파르나스 멤버십" 안내장 및 호텔 홈페이지의 멤버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롯데호텔 트레비클럽 멤버십

롯데호텔 트레비클럽을 원하는 회원님께서서는
CLUB1 컨시어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CLUB1 컨시어지(1599-1177)로 신청 시 트레비클럽 멤버십 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롯데호텔 트레비클럽

멤버십 혜택

※ 롯데호텔 트레비클럽 멤버십 CLASSIC 1.0 과 DINING 1.0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CLASSIC 1.0	DINING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이용권 1매 (Room Only) 롯데호텔 서울, 월드, 부산, 제주, 울산 * 호텔 별 객실 타입 및 제외 기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뷔페 1인 식사권 2매 롯데호텔 서울, 월드, 부산, 제주,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스토랑 5만원 이용권 6매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전 식음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스토랑 5만원 이용권 7매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전 식음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 교환권 1매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 교환권 1매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레파킹 이용권 2매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 주차요금은 별도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레파킹 이용권 2매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 주차요금은 별도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호텔 리워즈 웰컴 바우처 \$10 1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호텔 리워즈 웰컴 바우처 \$10 1매

[이용안내]

※ 이벤트 및 할인행사, 카드사 할인 등 중복 할인 제외

※ 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모바일, 실물카드)제시

※ 상기 멤버십 서비스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성수기 기간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롯데호텔의 "트레비클럽 멤버십" 안내장 및 홈페이지의 멤버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특전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15% 할인 - 이용 가능 호텔 : 롯데호텔 국내 전 지점, 롯데아라이리조트(일본) - 제외 : 시그니엘 및 롯데리조트 - 스위트룸 및 추가 옵션은 할인에서 제외 - 객실 할인은 홈페이지 일반 요금 기준, 별도의 프로모션과 중복 할인 불가 - 객실 할인은 롯데호텔 예약실을 통해 사전 우선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 계절 패키지 10% 할인 - 이용 가능 호텔 : 롯데호텔 국내 전 지점, 롯데아라이리조트(일본) - 제외 : 시그니엘 및 롯데리조트 - 특별 상품 및 제휴, 기타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회원 투숙에 한하여 할인 적용 · 롯데아라이리조트 리프트권 및 액티비티 2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특전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롯데호텔의 "트레비 멤버십" 안내장 및 홈페이지(www.lottehotel.com)의 멤버십 안내 참고 바랍니다.

식음 특전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할인 : 롯데호텔 서울, 월드, 부산, 제주, 울산에 한함 - 식사 10~20% 인원 수 할인 - 롯데호텔 부산 더라운지 앤 바 & 풀카페 식음 10% 할인 - 롯데호텔 제주 풀카페 식음 10% 할인 · 베이커리 20% 할인 · 룸서비스 10% 할인 · 전 업장 음료 10% 할인 - 주류 포함 (리테일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 특전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롯데호텔의 "트레비 멤버십" 안내장 및 홈페이지 (www.lottehotel.com) 의 멤버십 안내 참고 바랍니다.

기타 특전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면세점 GOLD카드 발급 · 남, 여 사우나 입장료 20% 할인(동반객 1인 포함) - 이용 가능 호텔 : 롯데호텔 서울, 월드, 제주, 울산, 부산 · 롯데호텔 침구류 셋트(해운 베딩) 구매 시 10% 할인 - 문의 : 02-759-7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특전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롯데호텔의 "트레비 멤버십" 안내장 및 홈페이지(www.lottehotel.com)의 멤버십 안내 참고 바랍니다.



3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오크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을 원하는 회원님께서서는
CLUB1 컨시어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CLUB1컨시어지(1599-1177)로 신청 시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오크 멤버십 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오크

쿠폰 특전

객실형, 혼합형, 식음형 중 택 1

1. 객실형

- 디럭스룸 무료 숙박권 2매
- 객실 View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2. 혼합형

- 디럭스룸 무료 숙박권 1매
- 식음료 10만원 이용권 2매

3. 식음형

- 식음료 10만원 이용권 4매
- 워커힐 HMR 상품 교환권 1매

※ 상기 멤버십 서비스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워커힐 호텔의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오크' 안내장 및 호텔 홈페이지의 멤버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할인 특전

- Daily Rate 할인
- 객실 패키지 할인

※ 상기 멤버십 서비스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워커힐 호텔의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오크' 안내장 및 호텔 홈페이지의 멤버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음료 할인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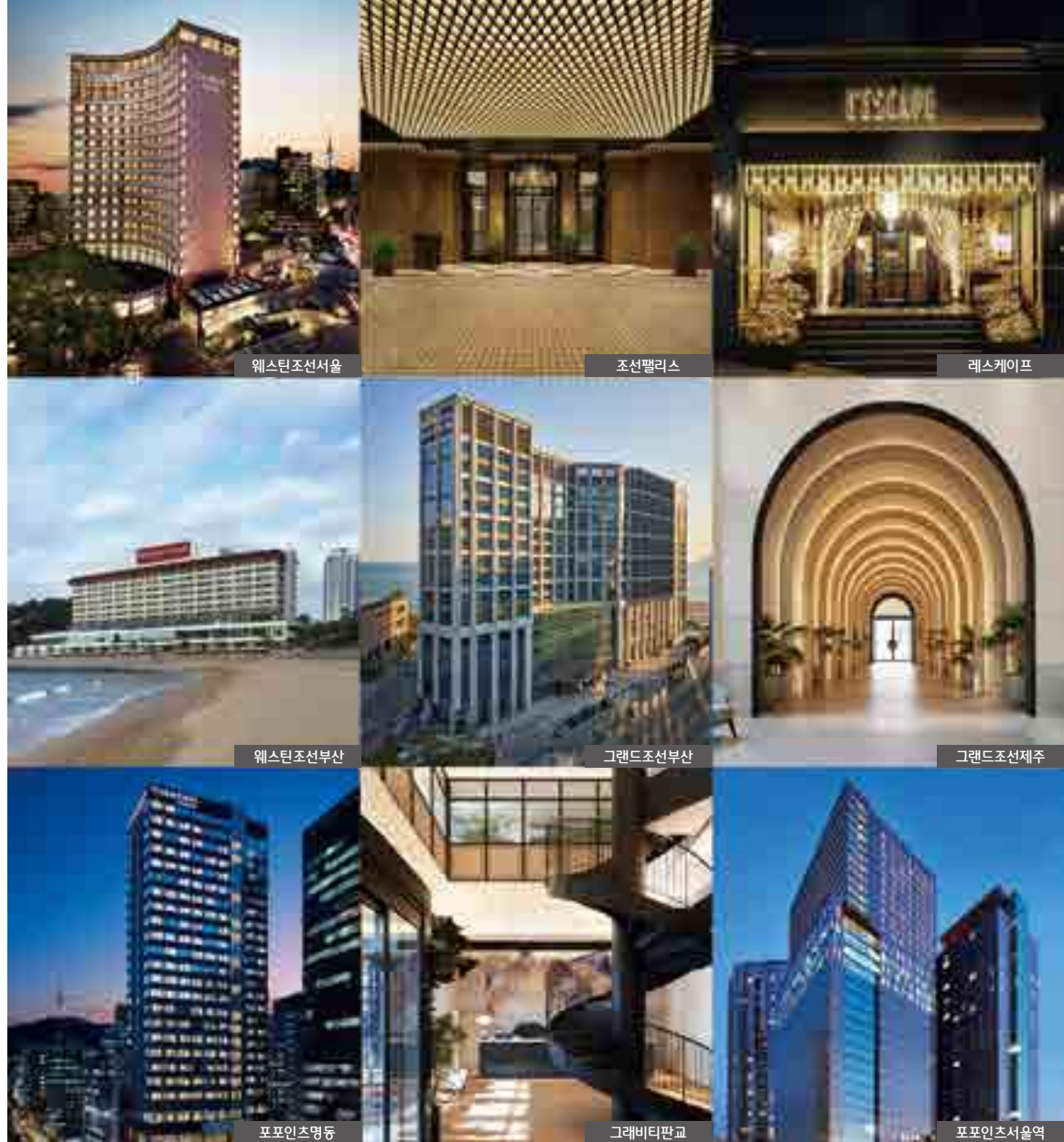
- 식사 인원수에 맞춰 별도 할인율 적용
- 음료 및 주류 할인
- 웨딩 및 가족연회 할인
- 워커힐 일부 외식업장 및 직영 레스토랑 할인

※ 상기 멤버십 서비스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워커힐 호텔의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오크' 안내장 및 호텔 홈페이지의 멤버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할인 특전

- 워커힐 골프연습장 할인
- 스파 할인
- 제휴 호텔 및 전시장 할인

※ 상기 멤버십 서비스 상세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은 워커힐 호텔의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오크' 안내장 및 호텔 홈페이지의 멤버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틴조선서울

조선팰리스

레스케이프

웨스틴조선부산

그랜드조선부산

그랜드조선제주

포포인츠명동

그래비티판교

포포인츠서울역

4 조선호텔앤리조트 클럽조선 VIP 골드

조선호텔앤리조트 클럽조선 VIP 골드 멤버십을 원하는 회원님께서서는 CLUB1 컨시어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CLUB1 컨시어지(1599-1177)로 신청 시 '클럽조선 VIP 골드 멤버십' 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 조선호텔앤리조트 멤버십 사용처:

조선팰리스, 웨스틴 조선 서울, 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제주
레스케이프 호텔, 그래비티 서울 판교, 포포인츠 조선 서울역, 포포인츠 조선 명동, 호무랑(청담)

조선호텔앤리조트 클럽조선 VIP 골드

회원특별 우대 쿠폰

혜택 사항	이용안내
· 디럭스 룸 무료 숙박권 1매	· 공통 제외일 : 1/1, 5/5, 12/24,25,31 · 추가 제외일(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제주) : 토요일, 여름 성수기, 설 연휴, 추석 연휴
· 금액 할인권 제공 - 20만원 할인권 1매 - 10만원 할인권 1매 - 5만원 할인권 3매	· 사용처 : 조선호텔앤리조트 모든 호텔의 객실 및 레스토랑, 격물공부(웨스틴 조선 서울), 호무랑(청담점), 조선호텔 리테일 상품(침구 및 명절세트 등)
· Wine Corkage Free 이용권 2매	· 1일 1매 사용 가능하며, 가지고 오신 와인 1병 (750ml)에 한함 · 제외일 : 레스토랑 이벤트 및 갈라디너 행사일

객실 이용 특전

혜택 사항	이용안내
· 5% 할인(공식 웹사이트상 객실 요금에서 적용 / 예약시점 기준) - 대상 호텔 : 그랜드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제주, 레스케이프 호텔, 조선팰리스 강남, 웨스틴조선 서울, 웨스틴조선 부산, 포포인츠 조선 서울역, 포포인츠 조선 명동, 그라비티 서울 판교	· 공통 제외일 : 1/1, 12/24, 25, 31 · 객실 특전 상세 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 사항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CLUB JOSUN VIP 멤버십" 안내장 및 홈페이지 (www.josunhotel.com)의 멤버십 안내 참고 바랍니다.

레스토랑 특전

혜택 사항	이용안내
· 레스토랑 상시 할인 - 인원수별 할인율 상이, 최대 20% 할인 - 음료 및 주류 제외	· 레스토랑 특전 상세 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 사항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CLUB JOSUN VIP 멤버십" 안내장 및 홈페이지 (www.josunhotel.com)의 멤버십 안내 참고 바랍니다.

기타 특전

혜택 사항	이용안내
· 플라워 샵 10% 할인 등 - 사용처 : 격물공부 (웨스틴 조선 서울 저층 로비) - 리테일 상품 제외	· 기타 특전 상세 내용(할인율, 할인 제공처 등) 및 이용 시 유의 사항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CLUB JOSUN VIP 멤버십" 안내장 및 홈페이지 (www.josunhotel.com)의 멤버십 안내 참고 바랍니다.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레파킹

국내 특급호텔에서 발레파킹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원 호텔별 월 5회, 법인회원 호텔별 월 10회, 가족회원 호텔별 월 5회 이용 가능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롯데호텔, 포시즌스 호텔 서울, 웨스틴 조선 서울

기타지방 롯데호텔 울산, 롯데호텔 제주

국제 브랜드 서비스 · mastercard world 유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레 파킹 서비스가 추가 제공됩니다. 대상 호텔 및 이용방법, 유의사항은 별도의 mastercard world 서비스 안내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조건 · 전월(1일~말일) 국내외 일시불/할부 사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
(단,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이자, 제수수료 등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
·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다음월 말일까지는 사용실적 관계없이 제공

유의사항 · 웨스틴 조선 서울의 경우 개인/법인/가족회원 월 4회(평일 3회, 주말 및 공휴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
· 호텔 영업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일 3시간 이내의 주차비용이 발레파킹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전 호텔에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롯데호텔은 호텔 이용 후 제공되는 주차확인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국내 특급호텔 식음료 (F&B) 할인

대상호텔	혜택	예약/문의
롯데호텔	하기 점 별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롯데호텔 서울, 월드, 부산, 제주 중문, 울산 * 유의사항 :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제외 룸서비스, 연회, 행사 메뉴, 소매상품, 미니바 등 제외	서울 02-771-1000 월드 02-419-7000 부산 051-810-1000 제주 064-731-1000 울산 052-960-10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식료 10% 할인 단, 음료 / 주류, 연회, 로비 라운지, 프라이빗 다이닝 제외	02-555-5656
안다즈 서울 강남	식음료 10% 할인 단, 주류 제외	02-2193-1234

국제 브랜드 서비스 · mastercard World 유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국내 특급호텔 식음료(F&B) 할인 서비스가 추가 제공됩니다. 대상 호텔 및 이용방법, 유의사항은 별도의 mastercard World 서비스 안내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료 및 주류, 룸 서비스, 연회, 행사 메뉴, 소매상품 등은 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할인 업장 및 할인 제외 기간은 각 호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국내 특급호텔 객실 할인

호텔명	혜택	예약 문의
롯데호텔	- 서울, 월드 : 25% 할인 - 제주 : 주중(월~목) 30% 할인 주말(금~일, 공휴일, 성수기) 10% 할인 - 마포, 김포공항 : 20% 한도 내 할인 - 계절 패키지 : 10% 할인 * 월드점, 제주점의 캐릭터룸은 할인 제외	서울 02-759-7311 월드 02-411-7777 부산 051-810-1100 제주 1577-0360 울산 052-960-1000
포시즌스 호텔 서울	전 객실 정상가에서 5% 할인 포시즌스 호텔에서 CLUB1 본인회원 결혼 시 스위트룸 제공	02-6388-50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우대 요금(BFR) 기준 10% 할인	02-555-5656
웨스틴 조선 서울	정상가 기준 20% 할인	02-771-0500
안다즈 서울 강남	하얏트닷컴 공식 웹사이트 내 당일 표준 요금 기준 10% 할인	02-2193-1234

국제 브랜드 서비스 · mastercard World 유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스파 할인 서비스가 추가 제공됩니다. 대상 호텔 및 이용방법, 유의 사항은 별도의 mastercard World 서비스 안내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호텔 객실 할인은 호텔에 직접 우선 예약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 제외 기간은 각 호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SKYSHOP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10% 할인

대한항공 SKYSHOP에서 CLUB1 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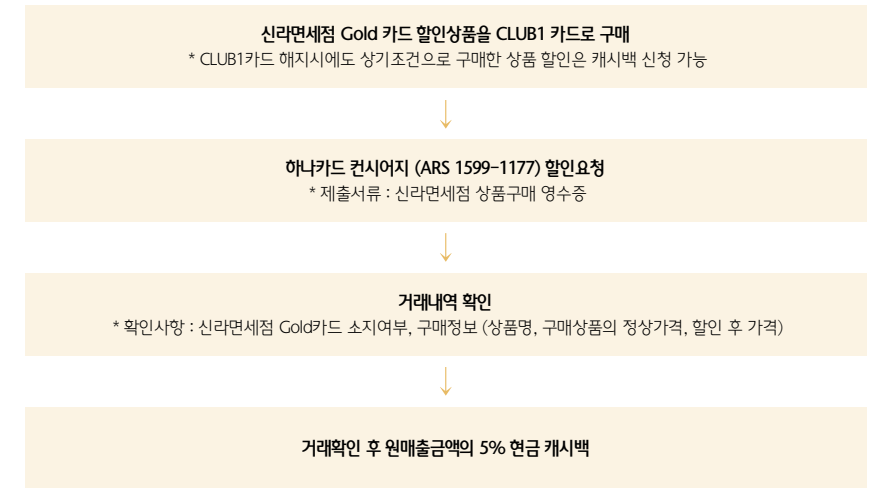
- 혜택내용** · CLUB1 카드로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10%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인금액 기준 연 100만원 한도 단, 법인카드는 제외)
-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현장할인이 아닌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1. 신라면세점 5~15% 할인

혜택내용 · CLUB1카드를 제시하는 고객님의게, 신라면세점 Gold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2. Gold 카드 할인상품을 CLUB1카드로 결제시 5% 추가 현금 캐시백 제공 (하나카드 제공)



이용문의 및 캐시백 신청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09:00~18:00)



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입장권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국제 여자 골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의 메이저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로, 골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여자 골프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대회기간 · 매년 10월 예정(일정 추후 공지)

대회장소 · 수도권 인근 골프장

이용안내 · 대회기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평일 09:00 ~ 18:00)

홀인원 상금 지원 서비스

국내 18홀 이상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하시면 CLUB1 축하 상금을 드립니다.

상금기준 · 연 1회
· 법인회원 200만원, 개인회원 200만원, 가족회원 100만원

지급조건 · 국내 골프장의 18홀 정규홀에 한함, 최소 130 야드 (119m) 이상 거리의 홀에 한합니다.
· 홀인원 당일 골프장 이용요금을 CLUB1 카드로 결제 시에만 해당합니다.
· 해외, 미 개장, 시범라운드, 9홀 퍼블릭, 이벤트 및 서비스홀은 제외됩니다.
· CLUB1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동시에 소지하신 경우에도 연회비 청구기준으로 연 1회 제공되며 CLUB1 카드가 정상상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세공과금 22%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제출서류 · CLUB1 카드 사용 영수증,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입금 계좌 사본
· 골프장 대표자 명의의 홀인원 확인서 원본 (도장 필수)
(원본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골프상해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담보	보장내용	보장한도(원)	피보험자	카드 결제여부
골프상해보험	사망 및 영구적 후유장애	75,000,000원	카드회원	카드회원
	배상책임(공제 2만원)	7,500,000원		자동담보
	골프용품손해	5,000,000원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상품안내 데스크 : 02-360-2588
보상전담 데스크 : 1899-4040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때묻지 않은 제주의 자연 그대로를 품은 종합휴양리조트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과 최상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호텔 및 리조트, 골프장(36홀)을 보유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혜택내용 · 해비치 컨트리클럽 제주 그린피 주중 20%, 주말 10% 할인
·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정규패키지 객실 10% 할인
·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식음업장 10% 할인

유의사항 · 공식 홈페이지 판매 기준이며,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전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 할인 입장 및 할인 제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제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문의 ·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064-780-8100
예약문의 064-780-8000
· 해비치 컨트리클럽 제주 064-766-6200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18:00)



(가족카드 서비스) 갤러리아 명품관, 롯데백화점 본점, AVENUEL 10% 할인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EAST / WEST) 및 롯데백화점 본점 / AVENUEL에서 CLUB1 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제공해 드립니다.

- 혜택내용** · CLUB1 가족카드로 갤러리아 명품관 및 롯데백화점 본점, AVENUEL에서 결제 시 10% 청구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인금액 기준 연 100만원 한도)
- 유의사항** · 가족카드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식당가, 일부 임대매장, 상품권 코너 및 인터넷 쇼핑물은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현장 할인이 아닌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BALLANTYNE 발란타인 10% 할인

2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한 발란타인은 최고의 장인들의인타르시아기법으로 창조한 다이아몬드 패턴의 캐시미어 컬렉션을 비롯, 최상급의 소재와 이탈리아 특유의 섬세하고도 완벽한 테일러링이 조화된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을 선보이며 전세계 상류층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재클린 케네디는 물론 세계적인 스타 니콜 키드먼, 키이라 나이틀리, 패리스 힐튼, 마이클 슈마허, 피어스 브로스넬은 발란타인의 열렬한 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혜택내용** · CLUB1 카드 결제 시 전 품목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플래그십 스토어에 한정, 기획행사 품목 제외, 정상품에 한함)
- 해당매장** · 발란타인 전국매장
-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ECLATBACI 에클라바치 10% 할인

에클라바치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주얼리를 제작합니다.
 획일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세공을 바탕으로
 보석 본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최고의 퀄리티를 선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 주얼리 트렌드를 연구하며 탁월한 안목과 기술로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에클라바치는 고객 한분 한분을 위한 정교한 작업, 장인들의 최상의 기술력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주얼리를 탄생시키며, 어느 순간에도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혜택내용 · CLUB1 카드 결제 시
 전 품목 10% 할인 (골드바, 순금제품, 기획행사 제품 제외)

해당매장 · 압구정 본점 (02-3444-0339)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8길 19

유의사항 ·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AMSALE
CHRISTOS®
KENNETH POOL®



AMSALE 암살라 10% 할인

암살라 디자인 그룹은 세련된 맨하튼 신부를 대표하는 '암살라(Amsale)' 와 뉴포트의 클래식하고 페미닌한 신부를 상징하는 '크리스토스(Christos)', 드라마틱한 헐리웃 셀러브리티를 위한 '케네스 풀(Kenneth pool)' 등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세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드레스 브랜드그룹입니다.

- 혜택내용**
- CLUB1 카드 결제 시
 - 드레스 구매 및 렌탈 시 전 품목 10% 할인
 - 개별 품목 렌탈 시 (가격 상관없이) 10% 할인
 - 리허설과 분식, 남자 의상 모두 포함되는 패키지 렌탈은 500만원부터 10% 할인
 - 1,000만원 패키지 렌탈부터 혹은 단별로 450만원 이상 렌탈 가격 드레스 선택 시 5% 추가 할인
- 해당매장**
- flagship store 플래그십 매장 (02-511-2504)
- 유의사항**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전 해당 매장으로 할인 품목 및 이용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WEDGEWOOD 웨지우드 10% 할인

영국 도자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시아 웨지우드' 경이 1759년에 설립한 웨지우드는 25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전통있는 생활양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실의 후원을 얻어 '여왕의 도자기' 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웨지우드의 작품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도자기의 대표적인 지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혜택내용** · CLUB1 카드 결제 시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백화점 바겐세일 (10%) 기간 구매 시 추가 5% (단, 기획행사 품목은 제외)
- 해당매장** · 웨지우드 전국 매장
- 유의사항** ·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XYSTUM 지스팀 플라워스 10% 캐시백

Xystum(지스팀)은 '작은 오솔길이 있는 유럽식 정원'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THE PLAZA가 직영하는 부띠끄 플라워 브랜드로, 도심의 건조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Natural Life Style을 제안합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자연주의 지스팀에서 자연 그대로의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플라워 데코레이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혜택내용** · CLUB1 카드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 해당매장** · 갤러리아점 (갤러리아 WEST 1F) (02-3442-4204)
- 이용방법** · CLUB1 컨시어지로 캐시백 요청(구매 영수증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하나금융그룹 금융 수수료 면제 및 우대서비스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공동망 송금 (자행분) 수수료 면제 · CD / ATM 이용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으로 송금 수수료 면제 · 다른 은행으로 송금 수수료 면제 · 폰뱅킹 수수료 면제 · OTP발급 수수료 (토큰영 / 카드영) 면제 ·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 자기앞수표 교환전자금화 수수료 면제 · 수표 / 어음 결제연장 수수료 면제 · (가계)당좌예금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 보관어음 수탁 수수료 면제 · 보관어음 반환 수수료 면제 · 부도처리 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통장 / 중서 등 재발행 수수료 면제 · 보호예수 수수료 면제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창구</td> <td>100만원 미만</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r> <tr> <td rowspan="2">폰뱅킹</td> <td>ARS</td> </tr> <tr> <td>상담원</td> </tr> <tr> <td rowspan="2">자동이체</td> <td>자동이체</td> </tr> <tr> <td>HTS / 인터넷</td> </tr> <tr> <td rowspan="2">지정일 이체</td> <td>임차보증금</td> </tr> <tr> <td>연간수수료</td> </tr> </table>	창구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폰뱅킹	ARS	상담원	자동이체	자동이체	HTS / 인터넷	지정일 이체	임차보증금	연간수수료
	창구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폰뱅킹	ARS											
		상담원											
	자동이체	자동이체											
		HTS / 인터넷											
	지정일 이체	임차보증금											
		연간수수료											
	<table border="1"> <tr> <td>환전 / 송금 시 환율우대 (스프레드 1/3범위내)</td> </tr> <tr> <td>해외 송금 수수료 50% 감면</td> </tr> </table>	환전 / 송금 시 환율우대 (스프레드 1/3범위내)	해외 송금 수수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권설정 송낙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거래매체 재발급 수수료 면제 · OTP (토큰영) 신규 / 갱신 / 재발급 수수료 면제 · 보관어음 취급수탁 수수료 면제 · 타사대체출고 수수료 면제 · 실물출고 수수료 면제 · 공모주 청약 (온라인 무료) 									
환전 / 송금 시 환율우대 (스프레드 1/3범위내)													
해외 송금 수수료 50% 감면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투자에 고객 기본 정보가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는 개인 본인 및 가족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법인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OK CASHBAG 적립 / 사용

혜택내용 · CLUB1 카드에는 OK CASHBAG이 탑재되어 있어 OK CASHBAG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OK CASHBAG 포인트 사용 시 비밀번호가 필요하오니, 비밀번호 확인은 OK CASHBAG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OK CASHBAG 기존 회원님의 경우 기존 비밀번호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용문의 · OK CASHBAG 사용 / 적립 안내 www.okcashbag.com
 · OK CASHBAG 고객센터 1599-0512 (평일 09:00~18:00)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카드 이용 안내

- 회원성명** · 회원님의 영문철자가 정확히 새겨졌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유효기간** · 최초 발급월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회원 서명란** · 카드를 받으시는 즉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 서명하지 않은 카드는 무효이며,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즉시 서명하셔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도난 / 분실하여 제3자가 부정 사용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설정안내** · 주민번호 및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은 피해주시고, 수첩에 기재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변경 안내** · 주소, 연락처, 근무처, 결제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CLUB1 컨시어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도난, 분실 안내** · 도난 / 분실 시에는 즉시 CLUB1 컨시어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신고 시 최종 이용내역 및 사고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카드이용 취소안내** · 해당 가맹점에서 별도로 취소전표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전표는 매출전표와 같으나 금액에 CREDIT 또는 Δ(-) 등으로 표시되며 그 취소금액은 청구 시 공제됩니다. 만약 청구 시 취소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CLUB1 컨시어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 국제브랜드 서비스 안내** · 이 상품은 mastercard World 등급의 국제 브랜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해당 국제 브랜드 서비스는 별도안내장(mastercard World 유형) 및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은 국제 브랜드 홈페이지(www.mastercard.com/kr)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서비스 유지 및 변경안내** ·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2010년 04월 01일)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①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일 고지하여 드립니다.
1. ①,①의2,② : 사유발생 즉시
2. ③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해외결제 및 기타안내** ·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 금액에 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mastercard 1.0%)와 하나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신용카드 0.2%)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 방법 :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전신환 매도율¹⁾+국제브랜드수수료²+해외서비스수수료³
1.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2.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mastercard 1.0%))×전신환 매도율
3.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해외서비스 수수료율(신용카드 0.2%))×전신환 매도율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DCC) 추가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지 통화 또는 미화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 서비스 이용 방법
: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App(마이페이지/라이프-이용안심서비스-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 일부 해외 거래 시 IC칩 비밀번호(PIN)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IC칩 비밀번호(PIN)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이용대금 결제 안내** · 결제 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 / 모바일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입금(송금 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 ※ 세부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카드이용안내-결제안내] 및 모바일 앱 [고객센터 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rd Tip

결제일별 CLUB1 카드 이용기간

구분	개인		법인
	일시불 / 할부 이용기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기간	일시불 / 할부 이용기간
1일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	전전월 2일 ~ 전월 1일	전전월 9일 ~ 전월 8일
5일	전전월 23일 ~ 전월 22일	전전월 6일 ~ 전월 5일	전전월 13일 ~ 전월 12일
7일	전전월 25일 ~ 전월 24일	전전월 8일 ~ 전월 7일	-
8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전전월 9일 ~ 전월 8일	전전월 16일 ~ 전월 15일
10일	전전월 28일 ~ 전월 27일	전전월 11일 ~ 전월 10일	전전월 18일 ~ 전월 17일
12일	전전월 30일 ~ 전월 29일	전전월 13일 ~ 전월 12일	전전월 20일 ~ 전월 19일
13일	전월 1일 ~ 전월 말일	전전월 14일 ~ 전월 13일	-
14일	전월 2일 ~ 당월 1일	전전월 15일 ~ 전월 14일	-
15일	전월 3일 ~ 당월 2일	전전월 16일 ~ 전월 15일	전전월 23일 ~ 전월 22일
17일	전월 5일 ~ 당월 4일	전전월 18일 ~ 전월 17일	-
18일	전월 6일 ~ 당월 5일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20일	전월 8일 ~ 당월 7일	전전월 21일 ~ 전월 20일	전전월 28일 ~ 전월 27일
21일	전월 9일 ~ 당월 8일	전전월 22일 ~ 전월 21일	전전월 29일 ~ 전월 28일
23일	전월 11일 ~ 당월 10일	전전월 24일 ~ 전월 23일	전월 1일 ~ 전월 말일
25일	전월 13일 ~ 당월 12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전월 3일 ~ 당월 2일
27일	전월 15일 ~ 당월 14일	전전월 28일 ~ 전월 27일	전월 5일 ~ 당월 4일

유의사항

- 지정 결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결제일로 합니다.
- 결제일 변경을 원하실 경우 CLUB1 컨시어지 1599-11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rd Tip

CLUB1 카드 전용상담 센터

CLUB1 컨시어지

전화번호 · 1599-117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도난 / 분실 (24시간) 1800-1111

홈페이지 · www.hanacard.co.kr

이용문의 · CLUB1 컨시어지 1599-1177 (평일 09:00 ~ 18:00)

하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5.12.30 개정]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 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 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카드(이하니 포함)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 (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용용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③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을 반환한 것 등 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 (가족카드 발급 등)

①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갱신·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등 동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③ 카드사는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 게 안내합니다.

- 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가능세
- 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 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 휴대폰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 가족카드 포인트 양도방법

- 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카드사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제6호의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안도감액·정지·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④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안도감액·정지·해지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안도감액·정지·해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알립니다.

⑥ 카드사는 제30조에 따라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인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를 제자를 가족카드 이송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4조 (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 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항 등 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 (FAX), 이송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 거르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⑤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아니됩니다.

제6조 (연회비 청구)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송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분납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제1회차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부가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날부터 일할 계산(회원회 카드이용이 가능하여 사용할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송시 제공되는 추가적액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연일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카드이용 정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에 거래정함을 요청한 경우
-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본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상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회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표되는 거래(이하 "개별 무승인매표"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표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2 (카드의 안도감액)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안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없이 이용안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본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 (카드의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 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본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표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

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표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본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 (휴먼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 카드 최종 이용(발급 후 카드를 전여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먼카드' 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먼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7조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7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먼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먼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고속도로 통행로 지불 기능(어디패스카드), 연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먼카드
-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제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일상환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 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 (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도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 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출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결제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카드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안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의 매표이용 등)

① 카드를 매표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의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해외매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등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경우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발표(이하 "F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안도)

① 카드 이용안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1년도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안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안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안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송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이용안도 중핵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중핵하고 회원에게 이용안도의 중핵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인 사전에 이용안도 중핵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중핵 이용안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안도까지 중핵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송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중핵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용안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송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㉔ 카드사는 이용안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할부규급)

-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칭하는 국내7개행정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 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일간 수수료로 계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만원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카드사는 카드사 지급결제비용의 상승, 회원의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⑦ 카드사는 할부거래임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임이 적용된다라도 동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후대문 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제지방계,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① 회원은 할부계약자를 교부받은 날(단,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방화고, 세탁기, 냉장고 및냉동·냉장보관용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고, 전기 냉방기(난방결정유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구해진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유금액
-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할부항변권)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유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납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제된 경우
-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아 말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가맹점의 채무부익영위와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카드사는 소비자 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종결이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의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율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율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이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절차에 따라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안도내에서 자동회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

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제23호에서 규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이 자동회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4항의 수수료율이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4.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 5.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③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용을 반영하여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적용합니다.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존중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라야 합니다.

-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①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고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후대문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거나 회원이 동의한 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회원의 카드에 대한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후대문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3. 인터넷, 모바일 등 인터넷 및 비말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호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4. 자동회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또는 리디기를 통과하거나 제3호에 정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후대문을 통하여 받은 일회성 비밀번호를 자동회기기에 입력하는 방식 등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인종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 (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우선순를 통한 본인신상 여부 확인 또는 시기별 후대문 문자메시지 서비스 인종보조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다.
- ③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① 카드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한다.

②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리율 상한선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상한한다.

③ 회원은 카드사가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대출금 상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리(원리금)공동분할상환, 거지 후 원금(원리금)공동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미니노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5조2(전일실적 안내)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일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서, 후대문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서를 회원에게 전일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15조3(카드 이용내역 표시)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 구매하거나 용역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내역명세서로부터 제공받은 여부 사당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상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4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16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외에 카드사가 본인회원에게 제공되는 자금용품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율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율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의는 서면, 전자서명법, 제2호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인종 본인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요기)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율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송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카드사는 이자를,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변동 가능성등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를,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본지점 또는 카드사의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동응용상담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員: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후대문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 인터넷, 모바일 등 인터넷 및 비말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호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4. 자동회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또는 리디기를 통과하거나 제3호에 정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후대문을 통하여 받은 일회성 비밀번호를 자동회기기에 입력하는 방식 등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인종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 (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우선순를 통한 본인신상 여부 확인 또는 시기별 후대문 문자메시지 서비스 인종보조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다.

③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① 카드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율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한다.

②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리율 상한선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상한한다.

③ 회원은 카드사가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대출금 상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리(원리금)공동분할상환, 거지 후 원금(원리금)공동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미니노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한다.

③ 원리금공동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한다.

④ 거지후 원금공동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지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 합니다.

⑤ 거지후 원리금공동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지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⑥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이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한다.

⑦ 미니노스방식은 대출 기간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도,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카드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미니노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원대상)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용례상(법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카드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안정 전에 국가경제공용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사는 해결되어 없었던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① 회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정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후대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팩스(FAX)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서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회원은 카드사에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좌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25조(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카드사 영점음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회차 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대출기간 연장)

- ① 대출기간이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카드사는 개인신용평정, 현재채무 등 카드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57항 결제제

제27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상응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분할(복식)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이월당도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평균영의 환율로 환산된 매 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③ 제27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외금액 x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x 전신신한대출

** (거래외금액 x 각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x 전신신한대출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인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2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 한번당**으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면 배상금***을 청구받아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다음날과 원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면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이율×365(윤년은 366)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인 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카드는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 권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 권리

그 이외의 경우 :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을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규약액 기준) 중 상소포함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⑥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외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관리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연회 리포트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송신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거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무거울 시 개편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명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사유서 등을 첨부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면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물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⑨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산이자, 기간이외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제4항 및 제5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⑬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계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카드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⑭ 회원은 제13항에 따른 환급기간까지의 지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금에 따라 발생하는 태형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⑮ 제1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⑯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용통, 기명용통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⑰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우편, 전자우편(E-MA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원이 본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에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⑱ 제17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제공 받는 대신 직접 수시열람 할 것 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선택하는 시점에 이용대금명세서 열람 방법, 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서 이 약관상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대금명세서 수시열람 선택시에도 이 약관상 이용대금명세서로 통지하도록 한 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문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28조(자동이체결제)

78 Clause

① 카드사는 회원의 각 카드이용대금을 제2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정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안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7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9조(기한이외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면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면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 회원을 조사하여 의결한 후 또는 외국인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면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외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외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 장기카드대출(가드론)이자(연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 장기카드대출(가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 회원의 고의·과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강제,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가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동법 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하는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다만 기한이외의 이익 예정일외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⑤ 카드사가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동법 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 가 지칭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30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한 채무 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6항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①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 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일에 잔여결제금액과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카드사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 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특수의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①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권유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설명서의 주요 내용(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과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전화 등을 통해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약정 체결 이후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설명서서를 제공합니다.

④ 카드사는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회원에게 설명한 내용을 회원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카드사는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L), 휴대문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열의한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카드사는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이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카드이용이 되는 기한에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대한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결제비율 상한이 안도되는 마지막 월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표시), 총 수수료금액(예금회원에겐 적용한 최근 월의 수수료율을 적용), 총 인금잔액(총 이월잔액에 대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⑦ 회원은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제23조에서 규정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약용 대상)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 결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속 카드 포함) 중 카드사가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의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및 일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제34조(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한 회원에 대해 12개월마다 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불이익이 없음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등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며, 회원은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터를 제공합니다. 약정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카드사는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등 서로 다른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③ 전항의 연장가능 약정에게는 카드사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정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이 기간 중 의의제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 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35조(결제금액)

①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이일약정 (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

일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입니다.

1.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 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2.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최소 청구금액: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당일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3.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약정 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당일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4.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수수료: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요율과일수/365(윤년은 366)

⑤ 금융과달일수: 전월 대금 결제일 익월말일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⑥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⑧ 약정결제비율과 상관없이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 (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 수수료를 상세내역을 휴대문 메시지 또는 전화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합니다.

⑨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결제금액은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적용되며 추후 일괄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6조(수수료율 등)

①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범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7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38조(계약해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일약정(리볼빙)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2. 회원의 탈퇴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3. 제29조(기한이외)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7항 자동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2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월일시이유내역이유종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은 물론 부담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련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면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민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차,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어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했지만 경우(회원의 과다 노출방지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시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이 임하도록 한다.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다른 사람의 영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④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을을 확인하고 조직원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8항 개인정보보호

제43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

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인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대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9항 보칙

제45조(위반할 경우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6조(위법계약의 예외)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7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규·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이동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변경신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동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일 알려드립니다.

-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외일약정(리빙링)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 종 요율 또는 연비율을 인상할 경우
- 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외일약정(리빙링)의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뒹수 등을 변경할 경우
-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④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편집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하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동대금명세서 수행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 야고, 통지 수령 후 의제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등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대금명세서의 수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동대금명세서 수행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행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2.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 이의제기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동대금명세서 수행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48조(경과 조차)

①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외일약정(리빙링)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안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③ 제15조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

④ 제15조 제4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⑤ 제15조 제8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⑥ 제27조제17항, 제27조제18항 및 제47조제6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⑦ 제17조4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먼카드 사유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⑧ 제15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⑨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1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⑩ 제3조2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⑪ 제7조의4제4항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먼카드 사유로 이용정지가 된 건부터 적용합니다.

⑫ 제14조제1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 회원부터 적용합니다.

⑬ 제15조제10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⑭ 제24조제2항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⑮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⑯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전자서명’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⑰ 제15조의3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

⑱ 제32조제2항~4항, 제47조제1항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49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50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지역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의 임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시행일: 2023. 07.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부속약관은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카드사"라 한다)와의 신용카드(이하 "카드(아나 비씨 포함)" 라함) 계약에 있어 신용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래관행을 명확히 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재발급 등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

①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회원이 대체·추가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각 발급시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갱신된 카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및 이 부속약관은 계속하여 적 용됩니다.

② 카드가 갱신·대체·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및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구카드 폐기 전까지 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약 가맹점의 이용 등)

① 회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자동납부계약)된 가맹점에서의 보령료·통신요금·전기요금·관리비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 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는 당초 신청한 카드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은 비밀번호 입력력자가 필요한 가맹점(해외가맹점 포함) 이용시에는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조기화 물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 가맹점(PC업체 등)과 카 드사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연급카드기능 부여)

하나은행계좌를 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연급카드기능을 부여하여 드리며, 회원은 카드로 연급자동차 지급(이하 "자동차 지급" 라 함)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급카드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의 '연급카 드 이용 약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연비히 등의 자동적용)

연비히 및 카드발급수수료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의 등급별, 종류별 금액은 카드사 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가맹점 거래의 취소)

회원과 가맹점이 거래 취소를 합의하고 회원이 취소신청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를 지양합니다. 다만, 회원의 기망행위 등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7조(결제금액의 변동)

지정결제일치의 결제금액은 이동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에 확정됩니다. 다만, 이동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 이후라도 매출취소, 청구보류 등 결제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제금액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한도의 특례)

우물식 교통요금, 항공기, 기내판매 등 카드사가 지정한 특정 승언건에 대해서는 이용한도에 관계 없이 무제한 거래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9조(할부거래 및 분할납부)

① 회원은 표준약관 제11조 1항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 최저 5만원부터 2회 분할 납부 및 할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② 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분할납부는 철저히 및 항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개월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10조(자동이체결제 및 취소매출의 청구)

①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출금기관의 사정으로 정상처리 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금기관에게 조정을 요청하 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할부 등 분할 납부하는 매출 건은 당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매입디오어 할부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상계)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간 도래 또는 표준약관 제29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 채권, 채무를 대등하 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분실·도난 보상신청 기간)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3조(약관 상호위반시의 책임)
회원이 표준약관 및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표준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고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여신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 르니다.

하나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시행일 : 2024.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이라 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 이하(이하(카드 포함)를 통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한다.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단, 사용자 지정카드 (예약지정기업카드 포함, 이하 '사용자 지정카드'라 함)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 (이하 '공용카드'라 함, 법인명의카드 포함)
-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 (이하 '사용자지정카드'라 함, 임직원명의카드 포함)
- 사용자지정카드 중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사용자 명의로 지정한 카드 (이하 '계좌지정기업카드'라 함.)

제2장 회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제2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회원은 카드사용자가 퇴사할 경우 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카드의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통하여 카드사용 권리를 통제하여야 한다.

제3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으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단, 고용임원(은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 회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 회원이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 경우 그 구성원(조합원)
- 제3자 명의 예 - 적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②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안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된다.

③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 중역시 변경된 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단, 한도 중역시 카드사는 연대보증인에게 변경된 한도에 대해 안내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원이 카드사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한 채무 및 연체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카드의 재발급, 갱신 등으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 어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⑦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연회비 등)가 해소되었을 경우, 보증기간 종이라 도 카드사에 서면으로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4조 (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회원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중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 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에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 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를 하여 처리된 건은 중천

약관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해지조항에 따른다.

③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연대보증계약약시 요청서 및 본 조 1항의 해지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영업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으나.

④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 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⑤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⑥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료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 권이 단절될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제3장 카드의 발급 및 관련 등

제5조 (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된다.

②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나.

③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 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 체전송한다. 이하 같다(이하, 팩스(FAX), 이송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의제 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 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된다.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 제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한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진다.

⑤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해 카드가 갱신·대체·재발급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된다.

⑥ 카드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의 보령료, 통신요금결제 등 회원,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인 처리를 위하여 카드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카드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 처리 의 중단을 원하는 회원 등은 해당 가맹점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카드의 발급 및 관련)

① 카드를 발급받으자 전까 지 기업(신청인)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금융카드’, ‘사용자지정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한다.

② 신용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영해 기업영을 기재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금융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동 카 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며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및 갱신 - 대체 -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 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되는 부 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유연회비로 구성된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유연회비는 카드 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신청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된다.

② 회원은 카드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발할합병, 기업영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 - 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용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 야산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제4제1항제1호의 기업구대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한다.
-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카드사는 별도의 서비스나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카드사 카드사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1항 외의 별도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징구내역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 고지하도록 한다.

제7조의2(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8조 4항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 연회비 반환금 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액에서 제외된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인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나.
-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회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나.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L), 단문서비스(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사유 발생 후 발송시간이며, 도착시간)에 제외)에 회원 동기에 알려드립니다.

-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연기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인 경우
-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의 고의 - 과실로 야산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회원의 영업의 폐지 등 경영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회원이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를 카드 또는 전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영의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나.

③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 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제5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이민,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의 고의 - 과실로 야산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회원의 영업의 폐지 등 경영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 제5항의 사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여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신용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총 12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해지 또는 유효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효 의사를 통 보하지 아니하면 제7항에 따라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소득도 통행료 지불 가능 (하이패스카드) 등 신용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의 경우 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⑦ 카드사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 지불 가능 (하이패스카드) 등 신용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의 경우 자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⑨ 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 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한다.

제4장 카드의 이용

제9조 (카드의 이용 및 사용제한 등)

- 회원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연기서비스), 장기카드대출(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다만,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 사용을 통하여 예매에서 단기카드대출(연기서비스)을 받을 수 있으나.
-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 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 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사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울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 는 경우에도 회원은 카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현금결제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카드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단, 회 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갱신 - 대체 - 재발급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카드도 자동결제 되던 거래는 회원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에도 유효하게 결제된다.
- 회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예약할 수 있으나. 다만, 예약 당시에 회원과 가맹점간에 약정한 유약금 납부의무 등은 해당 약정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카드를 예매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의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 신청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없이 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제11조 (카드의 이용안내)

- 회원의 이용안내도는 번인한도, 사업자한도, 사용자별 한도로 구분한다.
- 번인한도(단기카드대출(연기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의 요청한도 이내에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여 신청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송대금명세서 중 1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중역하고 회원에게 이 용한도의 중역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중천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중역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송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에 중역할 수 있으나.

㉔ 이용안도를 갠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자서비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8 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도를 갠액하는 경우에는 갠액안 무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1. 다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상태 또는 신용행적이 허락한 경우

2. 소득이락, 부채의 증가, 재산세공과 미납 등 상환능력이 허락한 경우

㉕ 카드는 회원이 이용안도 갠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용안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㉖ 카드는 이용안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조 (할부구입)

㉑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한은 국가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 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㉒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㉓ 회원은 연금가격의 분할대급에 월간 수수로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㉔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㉕ 카드는 연간 할부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는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정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㉖ 2개월이상 할부금이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카드는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할부회권)

㉑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회권환급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선박고, 세탁기, 날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설치에 전연인력 및 일부 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냉방용인력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구매한 상품이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㉒ 제1항의 경우 회원은 먼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가맹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며, 회원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인당반은 물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거래 가맹점에 반환하여 상호 완성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할부항면권)

㉑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할부계약에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면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㉒ 회원이 할부항면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하며, ㉓ 카드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㉔ 카드는 소비자거나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종결)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㉕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㉑ 회원은 카드사가 정한 일부 카드에 한하여 카드사가 부여한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인 해외 자동화기기(이하 해외 ATM) 등을 이용하여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㉒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㉓ 현금서비스 금액의 안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는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정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㉔ 회원이 해외ATM,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해외ATM기 등의 이용)

해외ATM기 등의 가맹기관,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카드사, 제휴은행 및 외국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㉑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마일리지 포함) 또는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는 회원이 탈퇴(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보제를 요청한 경우 탈퇴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퇴나 개인정보보제 요청한 경우, 해당 카드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㉒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규제적인 사유 및 내용)
- 카드 이송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의를 존중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 당일 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색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㉓ 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제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전화 또는 팩스(FAX), 휴대문자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할 때필수 전부 터는 매일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고지하여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고지하여 드립니다.
-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㉔ 카드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고자 할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18조 (연금카드기부 부여)

사용자지정카드 등 일부 카드에 한하여, 카드사와 제휴한 은행 계좌를 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현금카드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카드로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카드 기능 관련 핀권 사항은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장 대급결제

제19조 (대급결제)

㉑ 회원은 카드이용대급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한 대급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 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급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㉒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

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로써 환산된 후, 카드사환내력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송입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됩니다.

㉓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x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x 전신환매도율

㉔ 회원은 연체 또는 기간이료 상실사유 발생등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카드는 매달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제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과 원재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

㉕ 회원은 연체 또는 기간이료 상실사유 발생등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는 매달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제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초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 권리 유지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 권리 그 이외의 경우 : < 상환, 제3조에 따른 상환방식을 또는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맹청구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회금융 거래자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㉖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위류로 기재된 매출정보를 받았을 경우 대급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급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대급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㉗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연체배상,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 원금에 우선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간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시, 카드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서류를 달릴할 수 있습니다.

㉘ 채무변제서류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간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환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㉙ 회원은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㉚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액(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㉛ 카드는 회원이 대급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㉜ 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분할납부는 철회권 및 항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자동이체결제)

㉑ 카드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9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단, 통장보통/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정공적수입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㉒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졸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다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요율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되며, 카드발급 및 이용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㉓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직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㉔ 카드는 회원이 갹신대체제급금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회원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원의 이용대급을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결제계좌에서 자동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㉕ 전항의 사유 등으로 회원이 별도 자동이체결제계좌 설정을 신청하여 자동이체결제계좌를 새로이 변경 신청하는 경우 회원에게 개발급된 모든 카드의 이용대금이 새로 신청한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단, 계좌지정기입카드 등 자동이체결제계좌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카드별로 관리됩니다.)

㉖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

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카드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㉗ 제19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제21조 (기간이익의 상실)

㉑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일이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갚아야 할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병에 걸려 장기간 휴가하여 또는 외국인간의 결혼, 연고결항,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또는 등재사실이 있는 경우
- 회원의 영명의 폐지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㉒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이 당해 채무의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는 기간이익 상실후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간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간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 사유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㉓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등급 하향 등을 통독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간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기간이익의 상실, 신용등급하향의 변제기간 도래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아 하는 경우에 카드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의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위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22조 (카드이용대급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㉑ 회원이 카드이용대급(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㉒ 카드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 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게 도달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㉓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대금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카드의 분실·도난신고 및 보상)

㉑ 회원은 카드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 취소번호, 신고시점까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㉔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자의 각 효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3항제2호에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㉕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소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류용 등의 부당한 영위를 행한 경우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사기 또는 친족의 생령·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㉖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위·변조카드 등에 대한 책임)

㉑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㉒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호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㉓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5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 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성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 합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제26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㉑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및 카드사용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한 이유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㉒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㉓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기업신용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이 경우 제공되는 사실은 회원의 신용정보임)
-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㉔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구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관리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변경사양의 통지)

㉑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자우편(E-MAIL), 자택직장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번호,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제자, 카드 관리담당자 등 회원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제자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㉒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 등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8장 보칙

제28조 (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변경영입 등)

㉑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이음대금명세서 중 17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㉒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메시지, 팩스(FAX), 이음대금명세서 중 27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 각종 요금,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 카드사가 결제방법, 알부기간 및 잊스 등을 변경할 경우
-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㉓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㉔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부속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2조 (관할법원)

㉑ 이 약관에 다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일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㉒ 일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 (유보사항 및 정보 조치)

㉑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출전 약관에 따라 개인영입업(카드구 외환 법인개발카드, 구 하나비씨 개인영입업카드 포함)을 발급 받은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출전 약관 중 개인영입업카드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㉒ 제17조 제3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로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됩니다.

㉓ 제17조 제4항은 2014년 12월 26일 신규 발급 카드부터 적용합니다.

㉔ 제8조 제8항은 2015년 7월 21일 당시 제8조 제7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21일 당시 제8조 제7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가 제8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제7항에 따라 이용정지기간 중 회원이 애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같은 항 후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21일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㉕ 제7조 제3항 및 제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2021년1월1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상품부터 적용됩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2024.11.20 개정]

하나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로서이 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p>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호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호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라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회원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금융지주회사의 지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위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추약정보"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라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회원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예탁한 금전의 총액 예탁한 증권금의 총액 예탁한 증권금의 종류별 총액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로서이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개정 2024.11.20>

※ 고객정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위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목의 형태로 제한됨<개정 2024.11.20>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금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금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 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하나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하나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은행업), 하나증권(금융투자업), 하나카드(신용카드업), 하나캐피탈(알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생명보험(생명보험업), 하나손해보험(손해보험업), 하나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하나자산신탁(신탁업), 하나프랜차이즈(PL투자관리업), 하나금융티아(이시스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크(소액대출송금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자산운용업), 하나펀드서비스(사물관리업), 하나벤처스(신기술사업금융업), 지엠엔터테인먼트(전자정보결재대행업), 하나자산운용(자산운용업), 하나금융핀드(보험대리점업)입니다.<개정 2024.11.20>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로서이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로서이의 직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로서이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등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로서이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로서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그로서이간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각 그로서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고객의 조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위법·부당한 고객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로서이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2024.11.20>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전자직면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한만 보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로서이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짐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려분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에프앤아이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은행	고객정보관리인	하나금융티아이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증권	고객정보관리인	핀크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카드	고객정보관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하나펀드서비스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하나벤처스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지엠엔터테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자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하나금융핀드	고객정보관리인

고객권리안내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를 안내 드립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외로만 이용됩니다.

나. 고객의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공·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당 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등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공·부가서비스 및 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아래 항목과 같으며, 고객센터(1800-1111) 및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에서 신청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에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신청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하나카드 홈페이지 - 하나카드 지점

라.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신용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지 16]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양식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금융위원회 또는 신용정보보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하나카드 홈페이지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맹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맹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4)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회사에서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와 기준, 기초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상 사항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 정정 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사.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보관리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앱 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전송요구 시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전송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아.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본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allcredit.co.kr)

NICE평가정보(주) 1588-2486 (www.credit.co.kr)

SCI평가정보(주) 1577-1006 (www.siren24.com)

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요구권

하나카드의 이용 및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 피해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1800-1111 (서울 중구 을지로 66)

연신금융협회 02-2011-070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의빌딩 13층)

금융감독원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하나 현금C 카드 이용약관

2021. 6.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현금C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 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합니다) 또는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은행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비밀번호를 신고하고 교부받은 C(잔적회로)칩이 내장된 카드를 말합니다.
2. ‘카드 출금비밀번호’라 함은 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신청하는 4자리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하며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 함은 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신청하는 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하며 카드별로 하나의 PIN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카드 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현금카드와 연결하여 물품을 취급하거나 업무를 취급하기에 약정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6. ‘카드 결제인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제휴처에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와 함께 현금 지급을 요청하면, 이용자는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제휴처에 지급하고, 제휴처는 이용자에게 현금지급 요청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제휴처’라 함은 참가은행 등이 카드 결제인출서비스를 위탁한 가맹점을 말합니다.
8. ‘가맹점’이란 한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보관리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앱 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전송요구 시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전송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가맹점’이란 한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보관리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앱 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전송요구 시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전송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제3조(카드의 발급)

① 카드발급(재발급 포함) 신청시에는 은행이 정한 “은행거래신청서”, “현금C카드 발급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은 본인확인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며 이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합니다.

② 카드 1매당 최대 10회까지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예금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조(비밀번호)

카드 출금시 이용할, 카드 출금비밀번호와 PIN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5조(카드의 이용)

① 이용자는 카드로 은행 본지점, CD공용망 참가은행(이하 “참가은행”이라 합니다)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출없이 입금, 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기타 은행이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카드로 제휴처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인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잔돈처리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로 잔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카드 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PIN 포함)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의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합니다. 다만, 카드에 계좌가 1개만 수록된 경우에는 PIN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소액거래 (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본인 확인 사항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출금비밀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유래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의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이용자의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이용자가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출금이었던 금액을 같은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⑥ 가맹점에서 거래처로서 수익이나 면제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 받을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⑦ 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요산 등 청구금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 본지점 청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6조(거래제한)

① 은행 및 참가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거래금액과 잔액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며 이용자는 제공되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이용금액 등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 인출 또는 잔돈처리 거래 시 은행은 이용잔액을 이용자의 예금계좌 통장에 기장해 종료로써 이용 명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 인출 또는 잔돈처리 거래 시 은행은 이용잔세를 이용자의 예금계좌 통장에 기장해 종료로써 이용 명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의 1회 및 1일 이용금액의 한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한도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에 게시합니다.
⑤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및 가맹점 이용시간은 은행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에 게시합니다.
⑥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한 인출 또는 잔돈처리 가맹점에서 잔돈처리 거래에 대한 이용한도와 이용시간은 이용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
⑦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이체실적이 없는 고객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⑧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

⑨ 제 4.5 항에 의해 이체·인출한도가 하향 조정된 이용자가 본인이 별도 요청 시까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이체·인출한도가 7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⑩ 제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영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으로부터 입금된 경우와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8조(분실, 도난 등의 신고)

① 이용자는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비밀번호(PIN 포함) 누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은행의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효력이 생지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에 의해 사유 해제가 즉시 처리합니다.

③ 제 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9조(재발급)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 재발급합니다.

제10조(사용중지)

① 이용자가 일자에 관계없이 카드 출금비밀번호를 누락하여 3회 오류 입력시 또는 PIN을 누락하여 5회이상 오류 입력시에 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된 경우 해제를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 출금비밀번호, PIN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
③ 자동화기기의 고장, 정전, 온라인 장애 및 사고발생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 마강,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시 별도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의 비밀번호로 오류입력 횟수 초과, 잔액중영서 발급, 지급제한, 사고신고 접수, 예치한도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카드 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⑥ 부당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수수료)

① 카드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이용자는 발급매수당 2,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를 이용한 거래시 거래에 상응하는 수수료는 은행 및 참가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에 게시합니다. 다만,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한 인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 또는 유원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처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체제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② 은행은 소액거래(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 출금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가 승인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영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출금비밀번호나 PIN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이용자가 본후 카드의 분실(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은행은 소액거래(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 출금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가 승인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⑤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영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출금비밀번호나 PIN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이용자가 본후 카드의 분실(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⑥ 은행은 소액거래(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 출금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가 승인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⑦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영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출금비밀번호나 PIN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이용자가 본후 카드의 분실(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은행은 소액거래(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 출금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가 승인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카드의 반납)

카드의 해지 시에는 이용자는 은행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여러 계좌가 수록된 카드에서 한 개의 계좌만 해지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영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카드는 영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각 예금종류별 약관 및 약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참가은행간 CD 공동이용업무규정,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준법감리인 심사필 제2021-약관-제시11호(2021.04.22)

업무위탁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현황

하나카드가 고객님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해 아래의 위탁업체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위탁업체 추가 또는 변경 시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목적	수탁자	개인(신용)정보 제공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카드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저축은행, 하나캐피탈, 하나손해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성명, 주소, 연락처, 카드번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거래종료 후 5년까지
카드 회원모집(온라인)	(여)비바리퍼블리카, (여)카오페이, 토스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정보, 계좌번호 등 카드신청서 기재항목	신청후 30일까지
카드본인확인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SC평가정보, 다우데이터, 링크에이티, 라온시큐어, KCO인시스, 링크어브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고객식별정보(CI)	제곱 후 2년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코리아크레딧뷰로, SC평가정보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후 즉시 삭제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SC평가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값, 휴대전화번호, 가입한 이동통신사	제곱 후 1년까지
신용카드업무협력, 자금정산(국내외) 대행, 전자금융서비스(간접제공)사용 상품권 유통판매	하나은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카드번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회심사자 보호	제이앤비컨설팅, 외항산업, 리딩아이, 아이비커리어	성명, 자택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장주소, 계좌번호 외 카드신청서상 기재된 항목	정보보유 없음
가입회심사자 보호	(여)에이지엔서브	카드신청서상 기재된 항목	정보보유 없음
카드신청서 입력	에이지엔서브, 제이앤비컨설팅	성명, 자택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장주소, 계좌번호 외 카드신청서상 기재된 항목	정보보유 없음
전자문서 보관서비스	하나금융티아이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직장정보, 계좌번호 등 가입신청서 기재항목	거래종료 후 5년 또는 문서생성 후 10년
문서처리 업무	하나금융티아이	가입신청서, 채신고서	정보보유 없음
문서보관	통신안전보관	가입신청서, 채신고서	업무관련 설를 서클 및 부속서류 (방인된 형태로 제공)를 제공일로부터 보관(보존)기간까지
카드발급 업무대행	에이지엔서브	정보제공 없음(단, 발급카드실물 기재정보 접근 가능)	보유정보가 필요정보만 열람
카드배송	국택, 제니엘시스템, 마그넷서비스, 동서울우편진중공, 성호리인	성명, 안심번호, 수령지 주소	제곱 후 60일까지
연락처 안심번호 변환서비스	SK브로드밴드	휴대전화번호, 연락처(안심번호)	제곱 후 60일까지
승인거래중계,매입데이터 전송, 전자서명 보관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소아트로, 코벤, 다우데이터, 코레일네트웍스, 금융결제원, 케이에스넷, 한국신용카드결제, 토스페이먼츠㈜, 티머니, (여)에이지인시스, (여)케이알시스, 언택스, 이삭렌드코리아㈜, (여)아이엑스페이, 섀터나인, 에스에스지닷컴, (여)이플넷, 농업경제지주, 엑스넷이, 연에이지엔케이씨피㈜, 한국결제네트웍스(유), 피네보, 한국빌링시스템	카드번호, 승인번호, 승인일자, 승인금액, 거래일정보, 유효기간	거래종료 후 5년까지
고객상담 및 민원응대, 통화품질관리	KS한국공정보, 리딩아이, 에프앤유신용정보, 외항산업, 제이앤비컨설팅, 플렉스존, 고려휴먼스, 에이지엔서브, 아이비커리어, 비프로스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번호, 결제계좌, 녹취정보 등	계약 종료 시까지(필요정보만 열람)
다이렉트고객센터	플렉시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단말번호(PUSH ID)	동의 여부 대조후 즉시 삭제
ARS 출금동의	링크에이티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수탁사 자료수식 후 2개월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실사 업무유역	대주회개발인	성명, 생년월일 등	보유정보 없음
SMS / MMS	SK브로드밴드, 언택스, SK텔레콤	휴대전화번호	발송 후 폐기
보험계약점 TM	만일네트웍스, 탑블라인슈런스결설텍, 디비알엔엑스, 라이나인, 하나금융파인드, 해바라기타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일부), 직장명, 주소, 이메일(일부), 카드번호(일부), 유효기간, 고객번호, 한도, 결제일, 결제채좌정보, 보험상품상당/모집을 위한 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필요정보만 열람)
상호서비스 TM	플렉스존, 리딩아이, 비프라이머트, 다얼금용서비스, 레인스코리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카드번호, 유효기간, 상호계약채권 관련 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필요정보만 열람)
온라인 쿠폰, 경품 등 모바일 발송, 교환에 따른 발송/포인드 교환에 따른 발송/포인드 관련 업무 위탁	11번가, 두레시엔, 쿠르마케팅, CS엠즈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소	발송 종료 후 6개월까지 (쿠르마케팅 제공일 후 12개월)
이동통신서비스, 사용금액 확인서 등 계약 및 발송	데이타콤, 조유니, 카카오페이(재수탁사: 효성IT&고령상담), 트랜스코모스코리아, 주석회사 인포버인	성명, CI, 주소, 카드번호(마스크),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마스크), 카드사내번호	발송 후 즉시 폐기, 모바일 청구서는 발송 후 1년 소멸 또는 저용량임 시부터
법률 지원/소송	법무법인 태평양, 김연장, 세종, 윤촌, 화우, 대륙아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소송 및 자문신청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	업무종료 시까지
별초지 거래약정	윤병용 법무사, 최병일 법무사, 나우한법 법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택/직장), 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카드번호, 계좌정보, 결제은행	해당 법초지 목적달성 시까지
가입카드 연구비카드 및 부가서비스금 정보제공서비스	파투아, 쿠팡	카드번호, 사업자번호, 고객명, 주소, 연락처, 거래정보	정보제공일로부터 60일까지
카드사 공통 Qpay	시루정보	카드번호, 승인번호, 승인일자, 승인금액, 거래일정보, 유효기간, CV	거래종료 후 5년까지
재권추심	미래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MC신용정보, 우라신용정보, SO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KS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자,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정보, 연체정보(타기관 연체 등 해제 정보 포함)	계약 종료 시까지
미납연내 및 연체상당	KS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자,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정보, 연체정보(타기관 연체 등 해제 정보 포함)	계약 종료 시까지(필요정보만 열람)
신용회복 신청서 등 확인관리	고려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자,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정보, 연체정보(타기관 연체 등 해제 정보 포함)	계약 종료 시까지(필요정보만 열람)
재무면제 유예상품(DXDS)	플렉스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카드번호, 결제은행, 보상관련 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 (보상관련 정보는 거래완료 후 17개월)
부정사용 의심 건 정상 사용여부 모니터링, 사유처리 및 고객연내 전산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고려휴먼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카드번호, 결제은행, 거래정보 등	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금융티아이, (여)아드웨어웍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카드번호 등	계약 종료 시까지

(작성일자 : 2025.10.01 기준)

-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상세 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 발급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약정이자율 + 최대 3%)은 회원별·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이자율은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저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대출 기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6-C1a-06145호 (2026.04.28) / 준법심의 L-26-0524(2026.04.03) / V1.260406-32

